

美·멕시코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전자산업



최영훈
본회 미주과장

1. 서언

'90년 12월 브뤼셀에서 5년간 끌어온 우루파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실패로 끝난 이후, 미국과 EC 등 협상 주도국은 농산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해소하고 금년 2월내에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결프전쟁의 발발로 협상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결프전의 종전 가능성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협상그룹의 회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나 완전한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기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상과 더불어 쟁점 협상에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장기적으로 EC의 1992년 시장 단일화에 맞서기 위해 북미 지역의 경제 블록화를 시도 기체결된 미·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후속으로 미·멕시코간의 FTA 협상을 시작, 궁극적으로 미·캐나다·멕시코를 잇는 북미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 소고에서는 미·멕시코간의 FTA 내용과 이의 한국전자산업에 주는 의미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현황 및 향후일정

미·멕시코 양국간에 공식적으로 FTA 협상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부시 대통령과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간의 회담에서였다.

부시 대통령은 '90. 9. 25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멕시코와의 FTA 협상 의사를 통보하였고 캐나다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예상으로 양국간의 FTA 협상은 5, 6월에 시작되어 금년내에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92년 1, 2월경 의회 심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인 회의 표결은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일정을 맞추자면 FTA 협상은 미·의회

의 신속승인(Fast Track)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동의해야 한다.

3. 신속승인(Fast Track) 규정

1982년에 미국은 범세계적인 시장개방의 방법으로 GATT 각료 회담의 소집을 희망하였으며 1979년에 종료된 토쿄 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채택된 무역 자유화 조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하여 희망하였다.

그러나 1982 GATT 각료회의는 일반적으로 성공치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미국은 GATT에 명시된 통상에 관한 다자간 노력을 보완키 위하여 쌍무무역조치의 시행을 고려하게 되었다.

1974년 미 통상법은 대통령에 통상협상 권한을 부여하였고 Fast Track하에서 법안 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Fast Track하에서는 대통령의 법안이 변경되지 않고 신속한 일정으로 심의되며 의회는 단지 채택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표결할 수 있다.

1974 통상법에 들어있는 Fast Track 규정의 적용시한은 1988. 1. 2이었으나, '88종합무역법에 특정한 협상 목적의 성취를 위한 쌍무 혹은 다자간 무역협상 체결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본 규정이 다시 부활 되었다. '74 통상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협상 개시 의사를 사전에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쌍무협정에 관한 특별 조건이 '88 종합무역법에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쌍무,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하여 Fast Track 규정은 '91. 6. 1까지 유효하나 (단, 대통령은 '91. 4. 1까지 협정체결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실제로 6. 1까지 체결해야 함).

'88 종합무역법은 대통령이 3. 1까지 Fast Track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원에서 거부가 없을시, Fast Track은 '93. 6. 1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단, 대통령은 '93. 3. 1까지 협상 체결 의사를 통보하고 '93. 6. 1까

지 체결해야 함).

따라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위하여 의회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하며 상·하원에서 반대 없을시 '93. 3. 1까지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 체결의사를 의회에 통보하고, '93. 6. 1까지 체결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조건을 충족하여 협상추진 하면, 그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Fast Track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4. 미·멕시코의 FTA 추진목적

FTA는 일반적으로 무역과 연관이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양국의 주요목적은 투자증진에 있다.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여행 이후 FTA 추진을 시도하였다. 이 여행을 통하여 그는 EC와 일본이 타 지역에서의 자원 소모에만 단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멕시코도 성장촉진에 필요한 투자의 원천으로서 미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미국도 또한 살리나스 집권시 전개되고 있는 멕시코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FTA는 이러한 자유화를 더욱 확고히 하며, 미래에도 자유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세계가 사실상 블록화 현상으로 나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반구”와 함께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교역 관점에서 볼때 멕시코 또한 가치있는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관리들은 멕시코 GNP의 70%가 미국제품에 소비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보아, 미국의 수출업체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많은 제조상품의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와 우호적인 통상협정을 맺게되면, 미국 수출업자의 이득은 상당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동구권에서는 EC 기업과,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맞게 될 것이다.

1) FTA 미국의 FTA 추진 목적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멕시코는 대부분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나 GATT내에서의 관세율 적용은 아직도 50% 높다. 또 다른 관심사항은 미국의 대멕시코 농산물 수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멕시코 수입허가 요건의 철폐 내지 완화일 것이다.

나. 멕시코의 투자 자유화

현재까지는 법 개정 없이 규제조치를 통하여 투자자유화가 시행되어 왔음. 석유, 금융서비스, 부동산 투자 등 특정부문에 대한 추가 개정을 목표로 함.

라. 멕시코의 지적 소유권 보호법 개정 공약의 실천

특허법이 성안되어 4월에 멕시코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것임. 미국 행정부는 이를 호의적으로 평가했으나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개정 압력을 계속하고 있음.

라. 멕시코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특히 은행, 증권, 보험, 운송 부문의 자유화

2) 멕시코의 FTA 추진 목적

첫째 세계 최대시장에로의 안전한 진출이며 둘째 투자자본과 금융유인해서 세째는 살리나스 정정의 개방무역 및 투자정책 공고화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FTA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조항으로는 FTA의 핵심사항이 양국간의 점진적인 관세철폐이다. (미·가 FTA의 경우 10년내 모든 관세 철폐) FTA는 또한 투자, 서비스, 지적 소유권, 물량 수입규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쟁의적 무역 자유화에 대한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3) 분쟁해결기능

美·加 FTA와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FTA는 불공정 무역에 관한 분쟁 해결기능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미·가 FTA 협상에서, 캐나

다는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 관세법 적용의 예외를 추구하였으나 성공치 못했다. 그러나 분쟁 해결 기능은 각국 법정의 판정에 따르기 보다는 양국간 협의체에서 분쟁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초지했다. 멕시코는 매우 다른 반덤핑법과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미·멕시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4) 세이프가드

캐나다는 미국과의 FTA 세이프가드 조항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캐나다로 부터의 수입은 총 미국 수입에서 일정부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멕시코 FTA에도 유사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한국의 전자제품 생산업체의 관점에서, 미·캐나다 FTA에서는 양국 어느곳에서 가공 혹은 제조가 HS 관세분류의 변화를 가져올 경우 관련 제품은 면세혜택을 받는다. 조립생산의 경우, 최종제품은 최소한 50%의 미국이나 캐나다의 부가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FTA는 또한 특정제품과 제조공정에 대하여 예외적 경우를 열거하였다. 대멕시코 FTA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관심사는 외국의 투자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 목적으로 멕시코를 조립기지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이다.

6) 에너지

에너지 부문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캐나다 FTA는 에너지 부문 개방에 관하여 수입 추징금의 면제 등 진출보장적 측면에서 확고한 약속을 하고 있다. 멕시코가 석유부문에서의 투자를 매우 필요로 하지만 이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멕시코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특정부문의 투자에 대하여 융통성을 보이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프 전쟁이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의 증대는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FTA에 관심을 높이는 메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미결사항

미·캐나다 FTA에서 농산물과 보조금 부문의 비관세 장벽같은 몇개의 사안은 UR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향후 삼각회의에서 해결이 모색될 것이다.

5. 캐나다의 참여문제

캐나다가 미·멕시코 FTA에 참여하려는 목적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멕시코·캐나다간의 협정의 지속과 진정한 북미 자유 무역지대의 설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는 수많은 쟁무 협정에서 기타 국가로 부터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인하게 될 미국이 중심이 되는 형태의 FTA 진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캐나다의 참여는 몇 가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불경기를 겪어 왔고 미·캐나다 FTA는 캐나다에서 인기가 없다. 옳든 그르던간에 자유무역은 불경기로 부터 지역 결합체의 이완에 까지 여러 경제부문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캐나다의 노동계는 이미 미국의 노동력에 비하여 비교열위를 느끼고 있고 멕시코의 참고로 이러한 우려는 증폭될 것이다. 또한 멀로니 정부의 인기가 항상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 캐나다는 자국의 참여가 미·멕시코 FTA 성사에 위협을 준다면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캐나다 관리들은 또한 미·캐나다 FTA에서 무역 자유화

와 역행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으로서 3자 회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6. FTA와 한국의 전자산업

미·멕시코 FTA는 한국의 전자업계에 다음 3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번째로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특혜이다. 현재의 멕시코의 효율수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멕시코 생산업체의 경쟁위협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FTA가 투자유입을 촉진한다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멕시코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전자수출품에 대한 자유무역지대의 무역전환 교환은 쟁무적 관세철폐에 의한 성장증대와 이로인한 무역발생 효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의미는 한국 기업들이, FTA 혜택을 얻기 위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FTA 생산에 한국산 부품을 얼마만큼 포함시킬 수 있는가이다. 미·캐나다 FTA에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제품들은 원산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FTA 국가내에서 최소한 50%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한국의 전자제품 해외 조립공장은 훨씬 낮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 원산지 규정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세번째로 북미 FTA는 멕시코의 남부 국가에까지 결속이 확장된다면 블록 경제권의 시발이 될 수 있다. EC의 경제 결속도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거대한 경제블록의 출현은 한국에서 심각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하는 일본이 지배하는 경제권으로의 유입을 강요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 블록화 현상은 한국 전자업체의 판매와 구매선확보에 영향을 줄 것이다.